의 안 번 호

1391

【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】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17. 9. 6.(목)

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9. 8.(금)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9. 18.(월)

2. 제안이유

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반영하여 근거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신설하고, 인용조문 변경 등 문구 정비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근거법령에 맞게 인용조문 변경(안 제3조)

나. 「지하수법 시행령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지하수 관리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·해촉 등 운영에 필요한 항목 신설 (안 제7조의2, 안 제8조)

4. 근거법규

가. 「지하수법 시행규칙」 제5조

나. 「지하수법 시행령」 제40조제4항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지하수법」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 지하수관리 위원회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,
- O 주요내용으로는

「지하수법 시행령」제5조제1항의 인용 조항을 명확히 하고, 「지하수법 시행령」제40조제4항에 따라 지하수관리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,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.

O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,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근 거 법 규

지하수법 시행령

제40조(지하수관리위원회) ① 삭제 〈2009.4.30.〉

-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(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·군수·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(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·군·구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. 〈개정 2011.12.30., 2012.6.8., 2013.10.30.〉
- 1.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
- 2.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
- 3.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
- 4.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지하수개발·이용 및 보전·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·해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 〈개정 2012.6.8.〉

[전문개정 2001.12.19.]

지하수법 시행규칙

- 제5조(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) ① 영 제8조제1항제2호, 같은 조 제3항·제4항,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시장(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 〈개정 2012.6.8., 2013.10.31., 2016.12.30.〉
 - 1. 출수장치 및 적산유량계(시간계측기 등 유량측정이 가능한 장치를 포함한다. 이하 같

- 다) 등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취수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가.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(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 만 해당한다)인 가정용 또는 국방·군사용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
- 나.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·어업용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
- 2. 지름 25밀리미터 이상의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여 지하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가. 굴착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 또는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(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인 지하 수개발·이용시설
- 나.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·어업용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
- 3.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굴착 등으로 인하여 흘러든 오염물질, 굴착 등으로 인하여 깨어진 물질과 굴착 시 사용된 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소독할 것
- 4. 음용수로 개발·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의 자재는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
- ② 지하수개발·이용자는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치한 적산유량계를 지하수의 취수현황이 적절히 파악될 수 있도록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7.>